

심 사 보 고 서

재단법인 충청북도창조경제혁신센터
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재단법인 충청북도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49
----------	----

2022. 9. 28.(수)
산업경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: 2022년 9월 5일

나. 발 의 자 : 김국기 의원 등 7인

다. 회부일자 : 2022년 9월 8일

라. 상정일자 : 제403회 충청북도의회(정례회)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
(2022년 9월 20일 상정의결)

마. 주요내용 :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김국기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도민들의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, 중소·벤처기업의 과학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용 중인 조례의 근거법인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조례의 근거법인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의 개정(안 제1조, 안 제3조)
- 소속 공무원을 센터에 파견할 수 있는 시행령의 삭제에 따른 조문 개정(안 제2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(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복순)

가. 제출배경

-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민들의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 중소·벤처기업의 과학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용 중인 조례의 근거법인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

나. 주요 검토내용

- 안 제1조와 안 제3조는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이 2021년 12월 28일 전부개정(2022. 6. 29. 시행)됨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임
- 안 제2조는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개정(2022. 6. 29. 시행)됨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창조경제혁신센터 파견 규정을 삭제하여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

다. 종합 검토의견

-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은 충분함
- 또한, 우리도 현실과 실무에 적합하도록 개정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입법이라고 판단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없 음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없 음”

6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 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 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재단법인 충청북도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재단법인 충청북도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재단법인 충청북도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4조의7제2항” 을 “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52조제1항” 으로 한다.

제2조제2항 중 “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 이라 한다) 제5조의7제3항에 따라” 를 “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 하기 위해” 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4조의7제4항” 을 “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52조제3항” 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역의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, 중소·벤처기업의 과학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4조의7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재단법인 충청북도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5 2 조 제 1 항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2조(행정지원 등) ① (생략) ② 도지사는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5조의7제3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센터에 파견할 수 있다.</p>	<p>제2조(행정지원 등) ①(현행과 같음) ② -----<u>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</u> -- ----- -----.</p>
<p>제3조(출연금 등의 지원) ① 도지사는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4조의7제4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 및 사업 수행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.</p>	<p>제3조(출연금 등의 지원) ① ----- ----- <u>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52조제3항</u>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
관 계 법 령

□ 중소기업창업 지원법

제52조(지역창업전담기관의 지정 등)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의 혁신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각 지역별로 전담기관(이하 “지역창업전담기관”이라 한다)을 지정할 수 있다.

② 지역창업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과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지역에 기반한 신산업·기술 창업 활성화와 기업가정신 고취를 위한 정책과제의 발굴 및 운영
2. 지역 창업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과 이를 위한 관련 기관·프로그램과의 연계 및 총괄
3. 지역 창업기업의 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이를 위한 관련 기관·프로그램과의 연계 및 총괄
4. 지역의 예비창업자, 창업기업 또는 중소기업과 관련된 법률, 금융, 고용 및 특허 등 상담과 관련 사무의 지원
5. 창의적인 아이디어, 신기술 등을 활용한 지역의 청년고용 창출 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
6. 중소벤처기업부장관,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과 업무
7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과 업무

③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지역창업전담기관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.

④ 제1항에 따른 지역창업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